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634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이선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1.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25403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9.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9. 5.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9. 접수 제17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19. 접수 제1292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장성훈, 판사 최수진

별지

목 록

(목적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량철골트러스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24층

1층 468.79m ²	7층 460.67m ²
2층 466.27m ²	8층 460.67m ²
3층 466.27m ²	9층 460.67m ²
4층 466.27m ²	10층 400.73m ²
5층 460.67m ²	11층 400.73m ²
6층 460.67m ²	12층 400.73m ²
13층 400.73m ²	19층 251.45m ²
14층 311.39m ²	20층 251.45m ²
15층 251.45m ²	21층 149.28m ²
16층 251.45m ²	22층 149.28m ²
17층 251.45m ²	23층 149.28m ²
18층 251.45m ²	24층 149.28m 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59.94m²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 80922.7m²

대지권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80922.7분의 21.78

